

**「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」 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<b>제2조(거래대상기관)</b> 당좌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~2. (생략)</p> <p>3. 법 제79조 단서에 따른 다음의 법인 가~라. (생략)</p> <p align="center">&lt;신 설&gt;</p> <p>마.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의 여신을 받는 영리기업</p> <p>4~5. (생략)</p>	<p><b>제2조(거래대상기관)</b> 당좌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법 제79조 단서에 따른 다음의 법인 가~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</p> <p>바.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의 여신을 받는 영리기업</p> <p>4~5. (현행과 같음)</p>	<p>- 당좌예금 거래대상기관에 상호저축은행을 추가</p> <p>- 목 번호 내림</p>
<p align="center">&lt;신 설&gt;</p>	<p align="center"><b>부 칙 &lt;2024. 5. .&gt;</b></p> <p>이 규정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- 부칙 신설</p> <p>- 시행일자 명시</p>